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81
----------	----

발의연월일 : 2006. 11. 22.
발 의 자 : 전병배의원외 4인

1. 제안이유

- 가.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나. 지역건설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안 제3조).
- 나.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4조).
- 다.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함(안 제5조).
- 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운영함(안 제6조).
- 마.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운영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 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시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계약 및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건설 산업 실태분석과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촉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은 시 및 자치구 건설산업 관련 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개발공사 건설산업 관련 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자치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 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6.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실무팀) ①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당면 현안에 맞게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

②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실무팀은 팀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④ 실무팀장은 건설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시 소속 건설 산업 관련 공무원, 건설 산업 관련 협회의 임직원, 그 밖에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第9條 (地方自治團體의 事務範圍) ① 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의 自治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 속하는 事務를 처리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例示하면 다음各號와 같다.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 組織 및 行政管理등에 관한 事務
 - 나. 條例·規則의 制定·改廢 및 그 운영·管理
 - 카. 地方自治團體가 필요로 하는 각종 調查 및 統計의 작성
2. 住民의 福祉增進에 관한 事務
3. 農林·商工業等 產業振興에 관한 事務
 - 차. 地域產業의 육성·지원
 - 타. 中小企業의 육성
 - 파. 地域特化產業의 開發과 육성·지원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 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시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③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및 부실 설계·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시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 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①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 산업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제7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 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건설 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방재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⑩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팀)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③ 실무팀은 건설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팀원은 시 건설산업 관련 부서의 사무관과 건설산업 관련 협회 사무처장 등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④ 실무팀의 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찬성의원서명